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9. 19.

유영하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4. 9.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7차 정무위원회 (2024.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 12. 2.)

상정

-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 12. 3.)

상정

- 제422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 2.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 제3차 정무위원회 (2025. 2. 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유영하의원)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SPC: 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유동화증권(P-CBO)은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에도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SPC)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유동화증권(P-CBO)이 특수채(공공기관이 발행함)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고,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용한 유동화증권(P-CBO)이 오히려 높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0까지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정 명 호)

1.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직접 금융시장¹⁾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로,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기업에 지원함.

○ “자산유동화”란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²⁾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하여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로,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은 자산유동화의 결과로 발행된 증권이며, 발행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³⁾ 등으로 구분하기도 함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상 자산유동화는

1)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같은 금융 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는 자금공급자가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부담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음.

2) 유동성이 낮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출채권, 매출채권, 정기예금 등

3) MBS: 부동산담보대출을 기초로 발행된 ABS

CBO: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된 ABS, 기초가 되는 회사채의 발행시점에서 유동화가 이루어진 경우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로 구분하기도 함

CLO: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

4) 이하 금융감독원, 『자산유동화 실무 안내』, 2013.12.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되는데, 유동화전문회사(SPC) 방식(법 제2조제1호가목), 신탁방식(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및 양자를 결합한 2단계 유동화(또는 재유동화) 방식(법 제2조제1호라목)이 있음⁵⁾.

□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상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수행하는 유동화회사보증은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금은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강기능을 수행함.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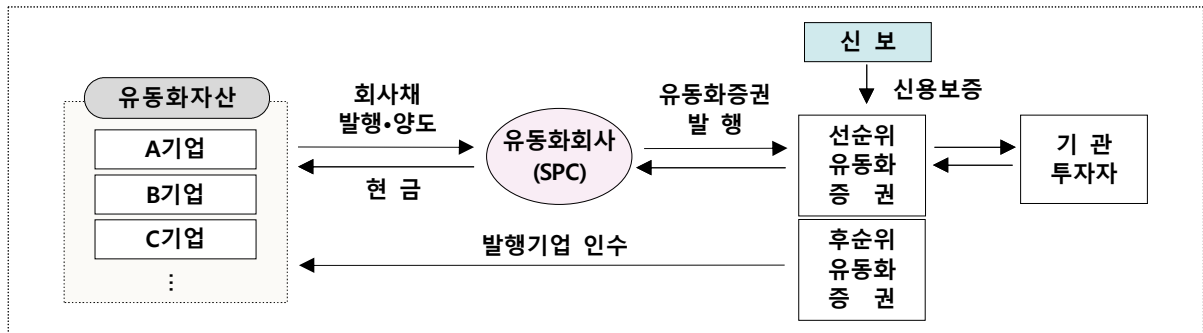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다른 신탁업자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유동화회사보증 기본구조>



(자료: 신용보증기금)

□ 기금은 2000년 7월 IMF 외환위기 극복, 경기침체 완화 등을 위한 대·중견기업 회사채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지침에 근거하여 최초로 유동화회사보증(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9년 5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하여 상시 보증제도로 전환한 이후 긴급 유동성 지원 및 경기 대응 프로그램 등으로 건설사 P-CBO, 시장안정 P-CBO, 주력산업 P-CBO, 코로나19 P-CBO 등을 운영함.

○ 제도 도입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 기금은 9,251개 기업의 72조 785
 억원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62조 1,160
 억원의 보증을 실시하였음.

- 이는 2024년 상반기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 발행총액(27.5조원)의 9.4%를 차지하고, P-CBO 시장을 기준으로 기술보증기금(7.6%) 및 중소기업진흥공단(1.5%)를 제외하고 90.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자산유동화 시장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비중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업체수**	원장수	기초자산	보증금액
신규발행	9,221	15,007	535,739	453,403
차환발행*	5,295	15,521	185,046	167,757
합 계**	9,251	30,528	720,785	621,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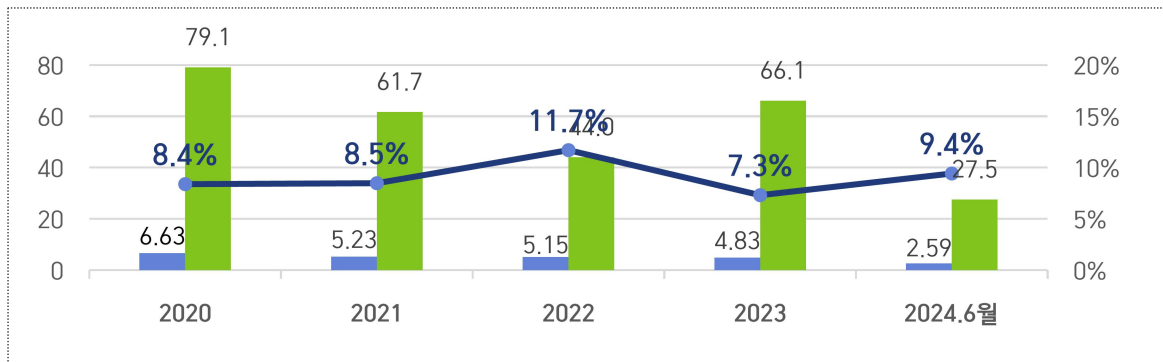
* 기발행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회사채(차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CBO

** 중복업체수 제거

(자료: 신용보증기금)

<국내 유동화시장에서의 신용보증기금 P-CBO 비중>

(단위 : 조원, %)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자산유동화 시장 내에서 기금의 P-CBO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방식인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및 보증은 유동화증권 발행인이 기금이 아닌 유동화전문회사가 되어 특수채⁶⁾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조달비용 높고 투자기관이 제한되어 시장 유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⁷⁾이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은 ① 기준금리가 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채”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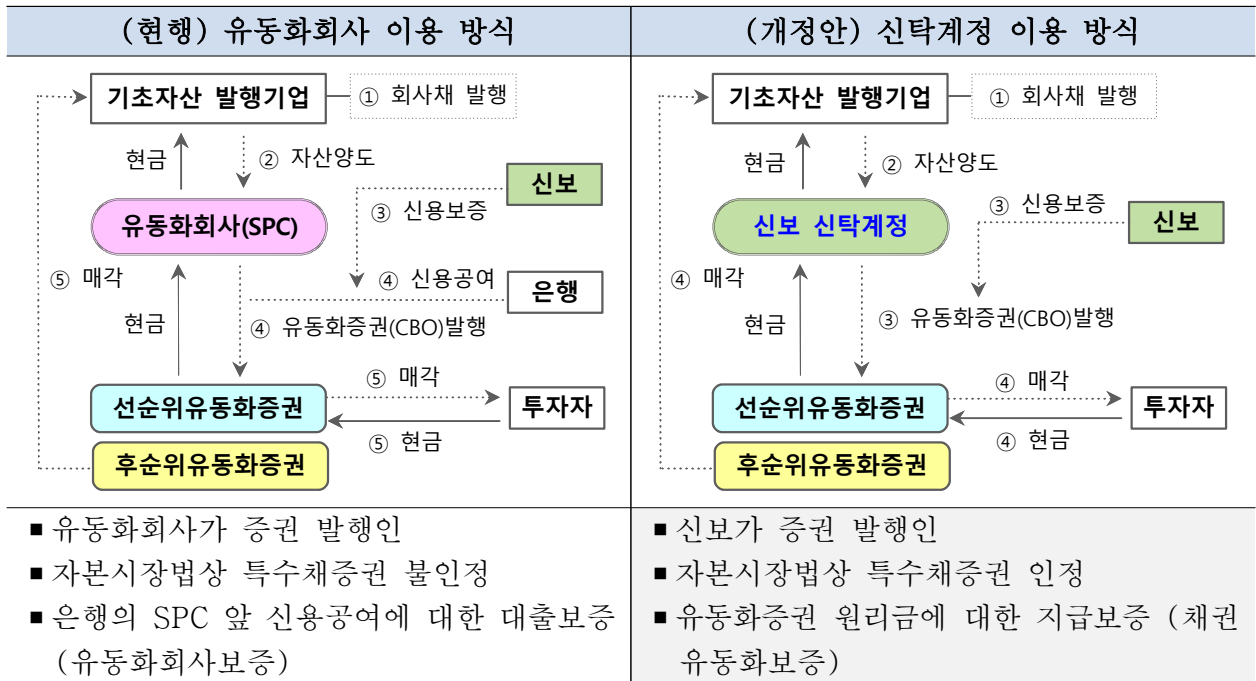
7) 2021년도 정부위원회 국정감사(2021.10.15.) 회의록 참조

사채 금리로 적용됨에 따라 특수채 대비 높은 조달비용을 부담하고, ②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사실상 무위험 채권임에도 회사채로 분류됨에 따라 일부 투자자의 투자회피 성향으로 투자기관이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5개 내외로 제한되어 왔음.

□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 외에 기금의 자체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 방식의 유동화 절차는 기금이 기초자산 발행기업의 회사채 등을 인수하여 자산보유자로서 기금 신탁계정에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수탁자인 신탁계정이 유동화자산을 집합화(pooling)하며 이에 기금의 신용보강을 더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후, 이중 선순위유동화증권은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후순위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 발행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신탁 방식의 유동화 절차(안)>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러한 방식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은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할 필요 없이 기초자산 발행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기금이 신용을 보장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므로, ① 이해관계자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과 이에 따른 발행금리 인하로 발행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② 특수채 지위 확보로 신규 투자 수요를 확보함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 지원 및 자산유동화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 방식인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시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회사, 기타 이해관계자(법무법인,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데⁸⁾,

8) 자산유동화 주요 참여자별 역할

- 개정안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직접 발행 시 사채인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업무수탁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SPC 이해관계자 역할 및 수수료>

구 분	수수료(Pool 당)		절감가능여부*
자산보유자(증권회사)	사채인수수료	대·중견 20bp, 중소 15bp	○
	주관사수수료	1bp	-
신용보강기관(신보)	신용보증료	50~140bp	-
자산관리자(신보)	자산관리수수료	4.0bp	○
업무수탁자	업무수탁수수료	2.4bp	○
자금관리자(은행)	자금관리수수료	1.65bp	○
법무법인	법률자문수수료	16.5백만원	-
회계법인	자산실사수수료	16.5백만원	-
신용평가사	신용평가수수료	1.2bp	-

주) 신보 직접발행 시 절감 가능 항목

(자료: 신용보증기금)

- 기금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특수채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과 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하여 발행하는 P-CBO의 평균 금리 차이는 29bp이며, 신탁 설정을 통한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시 업무수탁수수료 등 각종 비용 절감분 전액을 기업의 금리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당 50bp 이상의 금

참여자	역할
자산관리자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위하여 유동화자산을 관리하는 자이며, 서류상 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자산관리자에게 반드시 위탁해야 함. •자산관리자가 파산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추심한 금전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자산관리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 부과
업무수탁자	•실체가 없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위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 •유동화자산 및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관련서류의 보관, 추심자금의 보관 및 지급, 회계처리, 공시 등을 담당하며 자산관리자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도 수행함.
주관회사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의 특성에 맞는 거래구조에 대한 자문을 하고 각 유동화거래 참여회사를 연결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설립 및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한 총괄적인 서비스 제공 •통상 기업금융주선 및 증권의 인수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주관회사로 지정됨.
신용평가회사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결정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동화증권 투자에 필요한 정보 제공
회계법인	•유동화자산에 대한 실사자산평가 등을 통해 유동화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적정 가치를 산정
법무법인	•유동화계획 및 구조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 각종 계약서 작성

(자료: 금융감독원, 『자산유동화 실무 안내』, 2013.12.을 바탕으로 제작성)

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시 금리인하 효과 예시>

1) P-CBO증권 발행금리 인하

① 최근 3년간 MBS와 P-CBO의 평균 금리차 : 29bp

2) 이해관계자 수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② (SPC부담) 자산관리·업무수탁·자금관리수수료 : 8bp

③ (기업부담) 회사채 인수수수료 : 중소 15bp, 대·중견 20bp

발행금리 인하		이해관계자 수 감소		금리인하 효과	
① 이자비용		② 각종수수료		③ 인수수수료	
29bp	+	8bp	+	15bp	=
					합 계
					52bp

* 신탁방식으로 P-CBO를 발행할 경우 금리는 MBS 수준으로 추정

(자료: 신용보증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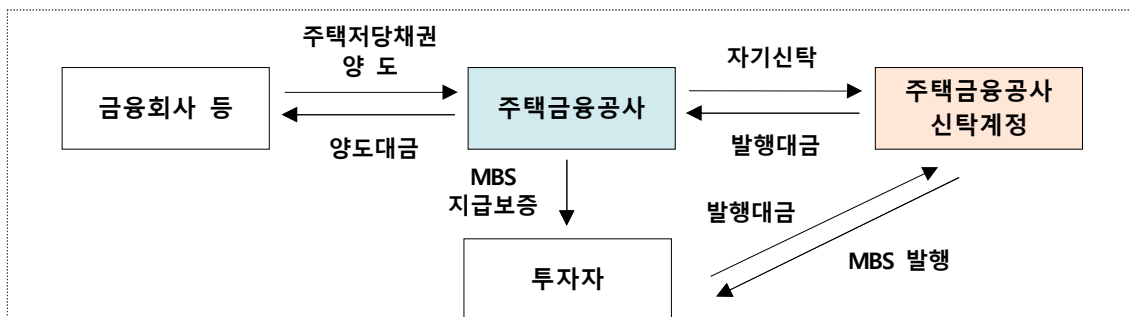
○ 참고로 이와 유사한 현행 제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사 신탁계정에서 발행하는 특수채인 “주택저당채권(MBS)”이 있음.

<주택금융공사의 MBS증권 발행 사례>

■ (기본구조)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주택저당채권을 ‘자기신탁’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수익증권을 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상 특례조치*를 적용받아 공사 내 신탁계정 활용

* 「신탁법」 상 신탁 설치 방법 예외,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 인가 의제 등



(자료: 신용보증기금)

<조문별 주요 개정사항>

개정안	개정 내용	비고
제1조(목적)	회사채등 유동화 추가	
제2조(정의)	•(신설) 유동화보증 •(신설) 회사채등 •(신설) 회사채등 유동화 ※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신설 •(신설) 유동화증권	
제23조(업무)	•(신설) 유동화보증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 행사 •(항 이동) 유동화보증 •(신설)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3조의3 (유동화보증 등)	•(신설)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시 자산 양수 근거 마련	
제23조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신설)	•(제1항) 회사채등 유동화를 위한 업무 규정 •(제2항) 신탁 설정 효력 시기 및 해지 권한 유보 •(제3항) 금융투자업 인가 의제 •(제4항) 대출채권유동화 시 대부업법 상 여신금융기관 의제 •(제5항) 기금 자산으로 미매각 회사채등담보부증권 매입 •(제6항) 신탁종료·지급보증 의무 이행을 위한 기금의 신탁 기초자산 매입 •(제7항) 신탁 종료시 최종 계산 및 계산서 공시,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경과시 수익자·귀속권리자의 최종 계산 승인 의제	
제24조(업무방법서)	•업무방법서에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관련 사항 추가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직접 발행 방식의 유동화보증을 최고보증한도에 포함	
제27조(조사의무)	•기금의 조사 의무에 유동화보증 포함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신용보증 통지 생략 대상에 직접발행 유동화증권 인수자 포함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이 매각할 수 있는 구상채권에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	
제33조(보증료 등)	•직접발행 유동화증권에 대한 기금의 보증료 수취	
제33조의2(수수료)	•신탁 수수료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자료제공 협조 요청 업무에 회사채등 유동화 추가 •과세정보 제공요청 범위 확대(유동화전문회사 및 직접 발행 시의 구상채권 매각 권리행사)	

2. 회사채 등 유동화 관련 정의 규정 신설 등

□ 개정안은 기금이 신탁 방식의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2조), 이를 기금의 목적(안 제1조) 및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

(1) 회사채등 유동화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 <u>유동화회사보증</u> ”이란 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 <u>유동화회사</u> ”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생략)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유동화보증</u> ”----- <u>회사채</u> <u>등 유동화와 관련된 채무</u> -----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 <u>회사채등</u> ”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신설>	11. “ <u>회사채등 유동화</u> ”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 <u>유동화회사</u> ”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 <u>자산보유자</u> ”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현행	개정안
<신설>	<u>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u> <u>나.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화 신탁”이라 한다)</u> <u>12.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회사가 제11호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11호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u>

□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방식은 크게 유동화전문회사(SPC)로 자산을 양도하여 SP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과, 신탁을 이용하는 방식 및 이 두 가지를 결합한 2단계 유동화(또는 재유동화)로 구분됨⁹⁾¹⁰⁾.

○ 현행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전문회사(SPC)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SP 방식으로 유동화회사보증을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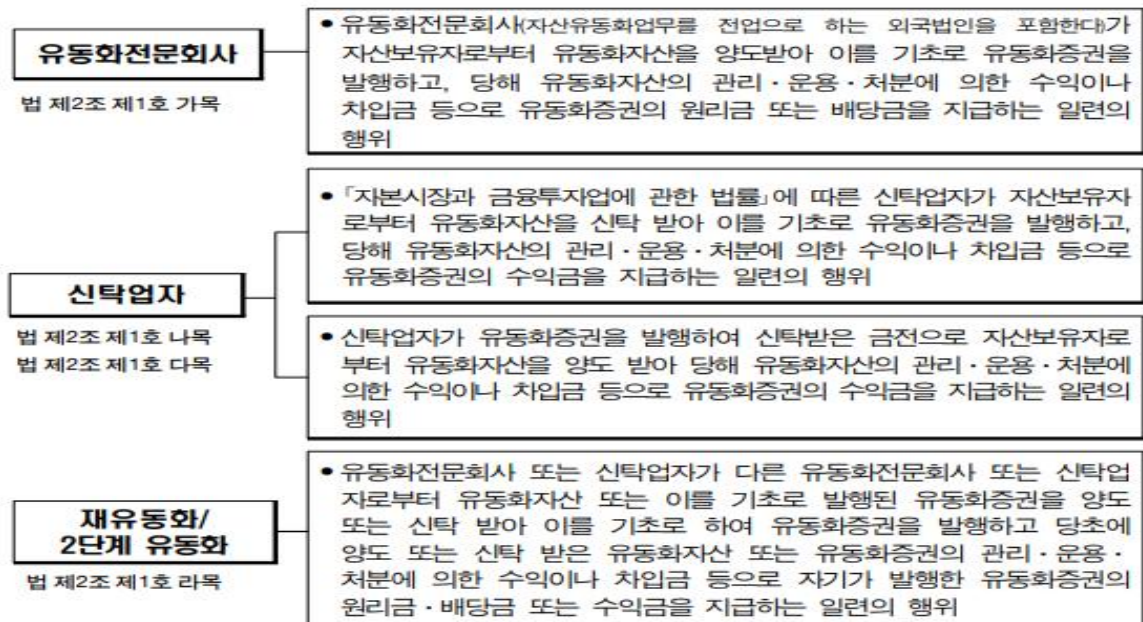
9) <자산유동화의 유형>

(자료: 금융감독원 자산유동화 실무)

□ 개정안은 기금이 신탁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에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회사채등’(안 제2조제10호)은 현행 제23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회사채 등 재산권¹¹⁾을 정의 규정에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다른 신탁업자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11) 제23조의3(유동화회사보증 등)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기업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

신설하려는 것이고,

- ‘유동화증권’(안 제2조제12호)은 자산유동화법에서 유동화 방식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유동화증권¹²⁾의 종류를 ①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경우 사채¹³⁾, ②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경우 수익증권¹⁴⁾으로 각각 규정한 것에 맞추어 유동화증권의 정의를 별도로 신설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기존 유동화전문회사 방식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은 ‘유동화 사채’로, 개정안에 따라 기금이 신탁 방식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은 ‘유동화 수익증권’으로 각각 규정하게 됨.

□ 개정안 제2조제11호는 ‘회사채등 유동화’는 기존 유동화전문회사 방식의 자산유동화와 개정안에 따른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 ‘회사채등 유동화’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에 해당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기금이 자산유동화를 수행하는 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말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채의 발행)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중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 제4장 제8절(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에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¹⁵⁾, 자산양도 등의 등록¹⁶⁾ 등의 절차를 「신용보증기금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자산유동화법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 제2조제11호가목은 기존 유동화전문회사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정의한 것이고, 같은 호 나목은 개정안에 따른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정의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방식(가호)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¹⁷⁾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자산보유자"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파.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해당 회사에 준하는 외국법인 중 자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중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 개정안에 따른 신탁 방식(나호)은 기금이 기업 등으로부터 취득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¹⁸⁾을 각각 의미함.

○ 개정안 제2조제8호는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변경하고, 개정안이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이 보증하는 대상으로 기존 유동화전문회사 방식과 신탁 방식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정의 규정은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필요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법문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2) 목적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	제1조(목적) ----- ----- <u>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u> -----

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러. 그 밖에 가목부터 더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8) 개정안은 후자의 방식을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으로 별도로 약칭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올직한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현행법의 목적은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유통과, ② 신용정보의 관리·운용을 통한 건전한 신용 질서 확립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에도 기금이 수행하고 있던 유동화회사 보증의 경우 목적 조항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신탁 방식의 유동화 근거를 추가함에 따라 ‘회사채등 유동화’를 목적 조항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신탁 설정을 통한 유동화증권의 직접 발행 업무는 주채무자의 채무 미이행에 따라 기금이 수행하는 본래의 기능인 “보증”과는 구분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도 법 목적에서 ‘유동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⁹⁾.

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기금의 업무

현행	개정안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2의2. (생략) <u><신설></u> <u>2의3. (생략)</u> 3. ~ 6. (생략) <u><신설></u> <u><신설></u> 7. <u>제1호부터 제6호까지</u> 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u>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u> 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업무) ①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u>2의3. (생략)</u> <u>2의4. (현행 제2호의3과 같음)</u> 3. ~ 6. (현행과 같음) <u>7. 유동화보증</u> <u>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u> <u>9.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제3호부터 제8호까지</u> ----- ----- ② ----- <u>재보증업무</u> -----.

□ 현행법은 기금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팩토링 운용, 경영지도,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종합관리, 구상권 행사,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및 이와 같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상 제23조제1항)과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제23조제2항)를 규정하고 있음(법 제23조)²⁰⁾.

- 기금의 업무를 규정한 제23조제1항과 제2항의 차이를 보면, 제1항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는 반면, 제2항은 별도의 목적에 대한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이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도입하고 회사채등 유동화들이 법의 목적으로 추가함에 따라 기존 제2항에 규정된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유동화보증’으로 변경하여 제1항에 규정하고, 기금이 자기신탁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행위(회사채등 유동화신탁)를 제1항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4) 기금의 보증 대상에 신탁 방식 유동화증권 포함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3(유동화회사보증 등)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기업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① -----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과 유동화회사가 금융회사등에 대해 부담하는 신용공여채무-----

20)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 2. 신용보증 / 2의2. 보증연계투자 /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팩토링 운용 /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u> 1. <u>유동화증권의 발행</u> 2. <u>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u> ② 기금의 <u>유동화회사보증</u> 운영과 관련하여 <u>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u>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u>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u>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삭 제> <삭 제> ② -----<u>유동화보증</u>----- -----<u>자산보유자</u>----- ----- -----. ③ -----<u>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u>----- ----- ----- -----.

□ 현행법 제23조의3은 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해당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보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와, 유동

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산 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과도하게 유동화자산을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 개정안은 기존의 유동화회사를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방식 외에 기금의 자기신탁을 통한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방식을 추가하면서, 기금 고유계정이 신탁계정에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지급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취지임.

3. 신탁 방식을 통한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근거 마련 등

□ 개정안은 기금이 신탁 방식의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3조의6), 기금 고유계정이 신탁계정에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지급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1항).

(1)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u> <u>② 「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 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있다.</u>

□ “신탁”이란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에게 특정의 재산(부채, 영업, 저작권 일부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설정 등 기타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행위를 하여 그로부터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관계임(「신탁법」 제2조21)).

21)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 신탁은 목적에 따라 크게 수익자신탁(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과 목적신탁(그 밖에 특정의 목적을 위한 경우)으로 나뉜다. 수익자신탁은 다시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으로, 목적신탁은 신탁법상 목적신탁과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으로 분류된다.

- 수익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신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신탁재산의 귀속주체인 수탁자 및 이익 향유 주체인 수익자가 존재함²²⁾.

- 수익자신탁 중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는 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재산 중에서 특정한 재산을 분리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처분·운용 등을 한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신탁을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자기신탁)이라고 함²³⁾.

□ 개정안은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도입하면서, 안 제23조의6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23조의6제1항의 경우 기금이 신탁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2) 최수정, 2023, 신탁법, 박영사

23)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방식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근거 및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기금은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됨.

- 신탁 방식으로 기금이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하는 경우, 자산보유자(위탁자)인 기금은 위탁자이자 수탁자로서, 위탁자가 자기의 선언만으로 수탁자를 겸하고 신탁을 설정하는 이른바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데, 신탁선언을 통해 자기신탁을 설정하고, 수탁자 겸 위탁자가 수익증권을 직접 제3자에게 발행하는 구조(타익신탁 방식의 공모구조)임.
- 기금은 회사채등을 취득·보유하는 자산보유자로서, 자산보유자가 자산을 신탁업자(신탁계정)에 신탁하고, 신탁업자는 이를 기초로 투자자에게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함.

□ 한편, 현행 「신탁법」은 이러한 자기 신탁의 경우에는 공정증서(公正證書)²⁴⁾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

24) 공정증서는 사법상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건(私權)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하며, 공정증서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고, 공정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서 추정됨.(『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한을 유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설정방법 및 해지의 제한은 2014년 전부개정된 신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허용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자기신탁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집행면탈 등 부정한 목적으로 남용²⁵⁾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한 것임.

○ 개정안은 이러한 신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²⁶⁾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둔 취지로 이해됨.

- 신탁법 상 신탁 종료 원인은 당연종료²⁷⁾ 및 법원의 명령에 의한

25) 예컨대, 위탁자가 집행면탈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선언을 하고 이후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시킴으로써 신탁재산을 다시 고유재산으로 회복할 위험이 있음.(최수정, 신탁법, 박영사(2022) 참조)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의 수에 관계없이 1개로 한정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7)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 합의에 의한 종료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합의에 의한 종료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나, 유동화 증권 발행 구조상 다수의 수익자의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실무적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신탁법에는 자기신탁의 설정방법에 대한 제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개정안과 같이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때에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관련 입법례 등²⁸⁾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2)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의제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③ 기금이 제1항에 따른 회사채등의 취득·보유·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조,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	행	개 정 안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기금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본다.

□ 개정안 제23조의6제3항에서는 기금이 신탁방식의 자산유동화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채등의 취득·보유·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 업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의제하고, 자본시장법 일부를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도록 하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법인격 요건, 대주주요건, 자기자본 요건, 인력요건, 전산·물적 요건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이른바 “법인격 요건”이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법인격이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함²⁹⁾.

29)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또한, 금융투자업의 종류³⁰⁾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상 기금은 금융투자업 인가 대상 “금융기관”³¹⁾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초 자산을 직접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함.

- 이에 개정안은 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보유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 7. (생략)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 2. 투자중개업 / 3. 집합투자업 / 4. 투자자문업 / 5. 투자일임업 /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1) 자본시장법 제16조(인가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 금융투자업규정 제2-1조(인가요건) ① 영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의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자본시장법 조문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자기 신탁 설정을 통하여 MBS를 발행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도 MBS 발행 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의제하고, 자본시장법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³²⁾.

□ 한편, 개정안 제23조의6제4항은 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를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기금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상 여신금융기관³³⁾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 유동화전문회사와 달리 기금은 대부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기관이 아님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³⁴⁾를 해소하려는 취지임.

3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⑨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4)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3) 유동화증권 매매각시 기금의 유동화증권 매입 근거 마련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⑥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⑦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최종 계산서 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최종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신탁법」은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과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이익상반금지)(제34조), 수탁자가 다수 수익자 중 1인의 지위를 겸하지 아니하는 한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이익향수금지) 규정하고 있음(제36조)³⁵⁾³⁶⁾.

35) 「신탁법」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탁방식의 유동화증권 발행에서 수탁자인 신탁(계정)이 기금의 고유 자산과 신탁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소위 자기거래(self dealing)로서 금지되므로, 기금의 고유 자산으로 회사채등담보부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

□ 그런데, 채권 시장의 불안정,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매매각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 발행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현행 유동화회사를 통한 유동화증권 보증방식 하에서는 기금에 회사채 인수기능이 없어 시장안정 P-CBO(2013년) 등으로 자본시장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참고로, 현행 SPC방식의 유동화증권 발행 시 매매각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지침을 통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여유자금운용분으로 일부 자체 매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 제23조의6제5항 및 제6항은 기금 여유자금으로 직접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시장 안정화 정책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³⁷⁾하고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36) 「신탁법」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⑦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공사가 발행한

있음.

□ 한편, 신탁종료와 관련하여, 현행 「신탁법」은 신탁이 종료되는 사유로서 당연종료사유(제98조), 위탁자와 수익자의 종료 합의(제99조) 및 법원의 종료명령(제100조)를 규정하면서³⁸⁾, 신탁이 종료하면 수탁자는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03조제1항), 수익자·귀속권리자가 계산 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03조제3항)³⁹⁾.

○ 개정안에 따른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의 경우 ① 수탁자가 수익자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⑧ 공사는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 38) 「신탁법」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 39) 「신탁법」 제10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①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1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 다수의 변동가능한 무기명 유동화증권의 경우 수익자 파악이 불가능한 점,
② 해당 자산유동화는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등록유동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 최종 계산 이후 수익자의 승낙을 공시로 갈음하고, 수익자가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신탁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구상권 행사의 법적 근거 보완

- ☐ 개정안은 유동화보증을 통한 지급보증 이행과 관련하여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및 수탁자(기금의 신탁계정)으로부터 양수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3제4항), 이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기금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의3).

현행	개정안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신설></u>	제23조(업무) ① ----- ----- -----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제23조의3(유동화회사보증 등) <u><신설></u>	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u>구상채권의</u>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 <u>구상채권(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u> ----- ----- ----- -----.

- ☐ 현행법상 기금은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고, 구상권의 효율적 회

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의2)⁴⁰⁾.

- 또한, 민법에서는 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보증인은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민법」 제481조·제482조⁴¹⁾).

□ 기금은 현행 유동화전문회사 방식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양수하여 구상권 행사 및 대물변제 채권의 매각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기금이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기초자산을 양수받아 구상권을 행사하고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40)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1)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기타 개정사항

□ 개정안은 업무방법서에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안 제24조), 직접 발행 방식의 유동화 보증을 최고보증한도에 포함시켜 운용하도록 하며(안 제25조제1항), 신용보증통지생략 대상에 직접 발행 유동화증권 인수자를 포함하고(안 제28조제1항), 기금의 신탁으로부터 보증료 및 신탁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의2), 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대상 업무에 유동화증권 관련 사항을 추가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업무방법서)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유동화회사보증</u> 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u>유동화보증</u>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4의2. (생략)	4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4의3. <u>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u> <u>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u> <u>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운용 방안</u> <u>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u>

현행	개정안
5. (생략)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채보증 및 <u>유동화회사보증</u>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제27조(조사의무) 기금이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u>신용보증(유동화회사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u>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u>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u>유동화회사가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u> 사채인수권자 또는 유동화증권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③ (생략) 제33조(보증료 등) ①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u>기업으로부터</u>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방법 다. <u>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u> 5. (현행과 같음)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 -----<u>유동화보증</u>----- ----- -----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조사의무) ----- -----<u>신용보증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유동화보증을 할 경우에는</u>----- ----- -----.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 ----- ----- ----- -----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보증료 등) ① ----- -----<u>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u>

현행	개정안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	<u>조에서 같다</u>)-----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수수료) ----- -----<u>제4호·제8호 및 제9호</u>----- ----- ----- -----.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 ----- ----- ----- -----<u>제23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3조의3제4항</u>----- ----- -----. ② ----- ----- ----- ----- ----- -----. -----<u>제23조제1항제2호의3에</u>

현행	개정안
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③ · ④ (생략)	<u>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같은 항 제5호</u>-----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업무방법서란 기금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운영위원회 의 결을 거친 것으로, 현행법은 기금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구상권 행사·재보증·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업무방법서에 서 적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24조⁴²⁾).

□ 그리고, 현행법상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 로 규정되어 있음.

○ 기금운용배수란 일정 시점에서의 보증잔액(보증규모)을 기본재산으

42)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하 각목 생략)
2. 구상권의 행사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보증 대상 채무
 - 나. 유동화 대상 자산
 - 다. 위험관리방안
 - 라.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로 나눈 값으로, 운용배수가 높을수록 보증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이 있으나 일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의 건전성 저하로 대위변제(지불능력)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어 보증정책의 일정 지원 목표와 기금의 건전성이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안정적인 수준의 운용배수인 ‘적정운용배수’ 관리가 필요함.

- 이에, 안 제24조 및 제25조는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을 통한 유동화 보증 업무를 신설하며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방법서에 기재·작성하도록 하고, 직접 발행을 통한 유동화 보증을 보증한도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 다음, 안 제28조의 통지의 효력에 따른 보증관계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신탁 방식의 유동화증권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에 유동화계획이 등록·공시됨에 따라 사채보증과 마찬가지로 인수자에 대한 통지가 불필요하므로, 신용보증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고,

- 안 제33조(보증료 등), 제33조의2(수수료),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는 개정안이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위원)

- 수정하여 의결함.

6. 수정안의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24일 정무위원장

나.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의제하면서 일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동 법률 제63조의 규정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증권 발행 등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임직원을 제외하고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개정안에 따른 회사채등 유동화 절차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23조의6제3항 등)

7. 찬반토론 요지

없 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 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제안자 : 정무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의제하면서 일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동 법률 제63조의 규정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증권 발행 등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임직원을 제외하고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개정안에 따른 회사채등 유동화 절차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23조의6제3항 등)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8호 중 “관련된”을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가 부담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7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중전의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자산보유자”라 한다)”를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양수한”을 “인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중전의 제12호) 중 “제11호가목”을 “제7호의2가목”으로, “제11호나목”을 “제7호의2나목”으로 한다.

안 제23조의3제1항 중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과 유동화회사가 금융회사등에 대해 부담하는 신용공여채무”를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를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로 한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안 제23조의6제3항 후단 중 “제63조”를 “제6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에 한정한다)”로 한다.

안 제27조 중 “신용보증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유동화보증을 할 경우”를 “신용보증(유동화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로 한다.

안 제28조제1항 단서 중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를 “유동화회사등이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로 한다.

안 제33조제1항 본문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제2조(정의) ----- ----- -----. 1. ~ 7.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 1. ~ 7. (개정안과 같음)
8. “ <u>유동화회사보증</u> ”이란 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 <u>유동화회사</u> ”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생략) <u><신설></u>	8. “ <u>유동화보증</u> ”----- ----- <u>회사채등</u> 유동화와 관련된 채무----- ----- -----. 9. (현행과 같음) 10. “ <u>회사채등</u> ”이란 기업이 발행한 <u>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u> 기업에 대한 대	8. ----- ----- ----- <u>관련하여</u>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 <u>유동화회사등</u> ”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 ----- -----. 9.·10.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출채권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
는 재산권을 말
한다.

11. “회사채등 유동
화”란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산유
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산유동
화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
호가목에 따른
유동화전문회
사(이하 “유동
화회사”라 한
다)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
하 “자산보유
자”라 한다)로
부터 양수한

7의2. -----
-----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

가. -----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 자산보
유자-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이하

<u>회사채등을 유</u>	<u>같다</u> -----
<u>동 화 자 산 으 로</u>	-----
<u>하여 유동화증</u>	-----
<u>권을 발행하고,</u>	-----
<u>당해 유동화자</u>	-----
<u>산의 관리·운</u>	-----
<u>용·처분에 의</u>	-----
<u>한 수익이나</u>	-----
<u>차입금 등으로</u>	-----
<u>유 동 화 증 권 의</u>	-----
<u>원리금 또는</u>	-----
<u>배당금을 지급</u>	-----
<u>하는 일련의</u>	-----
<u>행위</u>	-----

<u>나. 기금이 기업</u>	<u>나.</u> -----
<u>으로부터 취득</u>	-----
<u>하거나 금융회</u>	-----
<u>사 등으로부터</u>	-----
<u>양수한 회사채</u>	<u>인수한</u> -----
<u>등을 유동화자</u>	-----
<u>산으로 하여</u>	-----
<u>자신을 수탁자</u>	-----
<u>로 하는 신탁</u>	-----
<u>을 설정한 후</u>	-----
<u>신탁받은 유동</u>	-----

	<u>화자산을 기초</u>	-----
	<u>로 유동화증권</u>	-----
	<u>을 발행하고,</u>	-----
	<u>당해 유동화자</u>	-----
	<u>산의 관리·운</u>	-----
	<u>용·처분에 의</u>	-----
	<u>한 수익이나</u>	-----
	<u>차입금 등으로</u>	-----
	<u>유동화증권의</u>	-----
	<u>수익금을 지급</u>	-----
	<u>하는 일련의</u>	-----
	<u>행위(이하 “회</u>	-----
	<u>사채등 유동화</u>	-----
	<u>신탁”이라 한</u>	-----
	<u>다)</u>	
<u><신 설></u>	12. <u>“유동화증권”이</u>	11. -----
	<u>라 함은 유동화</u>	-----
	<u>회사가 제11호가</u>	-----제7호의
	<u>목의 회사채등</u>	<u>2가목의</u> -----
	<u>유동화에 따라</u>	-----
	<u>발행하는 사채(이</u>	-----
	<u>하 “유동화사채”</u>	-----
	<u>라 한다)와 기금</u>	-----
	<u>이 제11호나목의</u>	-----제7호의2
	<u>회사채등 유동화</u>	<u>나목의</u> -----
	<u>에 따라 발행하</u>	-----

	<u>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u>	----- ----- ----- -----.
<u>제23조의3(유동화회사보증 등)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기업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u> <u>1. 유동화증권의 발행</u> <u>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u> <u>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u>	<u>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①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과 유동화회사가 금융회사등에 대해 부담하는 신용공여채무-----</u> -----. <u><삭 제></u> <u><삭 제></u> <u>② 기금의 유동화보증 운영과 관련</u>	<u>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①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u> -----. <u>1. 유동화증권의 발행</u> <u>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u> <u>② (개정안과 같음)</u>

<u>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기금은 <u>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u>	③ -----<u>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u>----- ----- ----- ----- ----- ----- ----- ----- -----.	③ -----<u>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u>----- ----- ----- ----- ----- ----- ----- -----.
<u><신 설></u>	④ 기금은 <u>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u>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④ (생략)

<신설>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기
금은 자산유동화계
획에 따라 회사채
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
사등으로부터 인수
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
하고 유동화수익증
권을 발행할 수 있
다.

② 「신탁법」 제3
조제2항에도 불구
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자산유
동화계획을 금융위
원회에 등록한 때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적용하지 아니한다.

않는 임직원에 한
정한다).-----

-----.

④ 기금이 대출채
권을 기초로 회사
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그 업무
에 관하여는 기금
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본다.

④ ~ ⑦ (개정안과
같음)

⑤ 기금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
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

고 회사채등 유동
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
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⑥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
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유
동화수익증권에 대
한 지급보증 의무
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
에도 불구하고 유
동화자산인 회사채
등을 매입할 수 있
다.

⑦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신탁
이 종료한 경우 지
체 없이 신탁사무
에 관한 최종의 계
산을 하고 그 계산
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최종 계산서

	<u>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최종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u>	
제27조(조사의무) 기	제27조(조사의무) ---	제27조(조사의무) ---
금이 제23조제1항	-----	-----
제2호에 따라 <u>신용</u>	----- <u>신용보</u>	----- <u>신용보</u>
<u>보증(유동화회사보</u>	<u>증을 하거나 같은</u>	<u>증(유동화보증을</u>
<u>증을 포함한다. 이</u>	<u>항 제4호에 따라</u>	<u>포함한다. 이하 같</u>
<u>하 같다)을 할 경우</u>	<u>신용조사를 할 경</u>	<u>다)을 할 경우 또</u>
<u>또는 같은 항 제4</u>	<u>우 또는 같은 항</u>	<u>는 같은 항 제4호</u>
<u>호에 따라 신용조</u>	<u>제7호에 따라 유동</u>	<u>에 따라 신용조사</u>
<u>사를 할 경우에는</u>	<u>화보증을 할 경우-</u>	<u>를 할 경우-----</u>
그 경영상태, 사업	-----	-----
전망, 신용상태 등	-----	-----
을 공정·성실하게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채무를 보증”을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으로 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를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회사채등 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이라 한다)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11.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회사가 제7호의2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7호의2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3을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재보증업무”로 한다.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7. 유동화보증

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3조의3의 제목 중 “(유동화회사보증 등)”을 “(유동화보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동화회사가 기업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를 “자산보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를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제2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제1항에 따른 회사채등의 취득·보유·신탁 및 유동화수

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조,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기금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본다.

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⑥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⑦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최종 계산서 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이 경우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최종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운용 방안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제25조제1항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한다.

제27조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유동화회사가”를 “유동화회사등이”으로 한다.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상채권”을 “구상채권(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기업”을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3조의2 중 “제4호 및 제7호”를 “제4호·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23

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3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3조제1항제5호”를 “제23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같은 항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 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 약한 기업의 <u>채무를 보증</u> 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 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채무보증과 회사채</u> <u>등 유동화를 수행</u>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u>“회사채등 유동화”란</u> <u>「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u> <u>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u> <u>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것을 말한다.</u> <u>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u> <u>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u> <u>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u> <u>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u> <u>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u>

제2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양수한 회사 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이라 한다)

8.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8. “유동화보증”-----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를」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생략)

<신설>

<신설>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2의2. (생략)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

9. (현행과 같음)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11.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회사가 제7호의2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7호의2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3조(업무) ① -----

-----.

1. ~ 2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3.</u> (생 략) 3. ~ 6.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u> 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u>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u> <u>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u> 제23조의3(<u>유동화회사보증 등</u>) ① 기금은 <u>유동화회사가 기업의</u> <u>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u> <u>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u> <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u> <u>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u> <u>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u> <u>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u> <u>수 있다.</u> 1. · 2. (생 략)	<u>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u> <u>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u> <u>행사</u> <u>2의4.</u> (현행 제2호의3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u>7. 유동화보증</u> <u>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u> <u>9. 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u> <u>2호의3 · 제2호의4, 제3호부터</u> <u>제8호까지의</u>----- ----- ----- ② ----- <u>재보증업무를</u>-----. 제23조의3(<u>유동화보증 등</u>) ① --- ----<u>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u>- ----- ----- ----- ----- -----. 1. · 2. (현행과 같음)
--	---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④ (생략)

<신 설>

② -----유동화보증-----
-----자산보유자-----

-----.

③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

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제1항에 따른 회사채등의 취득·보유·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조,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④ 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기금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본다.

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⑥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⑦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지체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 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4.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라. (생략)

4의2. (생략)

<신설>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최종 계산서 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최종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업무방법서) -----

-----.

-----.

1. ~ 3. (현행과 같음)

4. 유동화보증-----

가. ~ 라. (현행과 같음)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u>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 수 등의 방법</u> <u>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 리·운용 방안</u> <u>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u> <u>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u>
5. (생 략)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 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u>유동화 회사보증</u> 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 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27조(조사의무) 기금이 제23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 (<u>유동화회사보증을</u>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또는 같 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 를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 ·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	5. (현행과 같음)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 ----- <u>유동화 보증</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조사의무) ----- ----- <u>유동화보증</u> ----- ----- ----- ----- ----- -----.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 -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사가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사채인수권자 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③ (생략)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33조(보증료 등) ①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

유동화회사등이-----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
---구상채권(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제33조(보증료 등) ① -----
-----기업(유동화보증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 제1항제3호 · 제4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

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수수료) ----- 제4호 · 제8호 및 제9호-----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 제23조제1항제2호 · 제2호

<u>지의 규정</u>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u>의2·제2호의3·제2호의4,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3조의3제4항</u>----- -----.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u>제23조제1항제5호</u>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u>제23조제1항제2호의3</u>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같은 항 <u>제5호</u>----- -----.
1.·2. (생략) ③ · ④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